

의안번호	제 53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##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#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번호	제 53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 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(2007. 10. 4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“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”을 “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”으로  
    띄어쓰기 함.

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
    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4조 → 제60조(안 제1조)

다.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

    1)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(안 제4조·제10조)

    2) oo의 규정에 의하여 → oo에 따라(안 제1조·제5조)

    3) oo의 규정에 의한 → oo에 따른(안 제5조·제16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

#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”을 “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조제3호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 「<u>지방자치법 시행령</u>」 제 <u>60조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----- 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이의신청) ① 청원이 <u>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</u>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의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<u>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</u>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이의신청) ① ----- <u>제4조제3호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6조제3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징계) 청원을 심사, 의결하는 의원이 <u>제9조의 규정에 의한</u>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지방자치법</u> 및 <u>거창군의회 회의규칙</u>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징계) -----</p> <p><u>제9조에 따른</u> -----</p> <p>----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 -----</p> <p>-----</p>

## 관계 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60조 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